

지난 1월 26일 국토개발연구원과 대한건설협회의 공동으로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시장개방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본지에서는 시장개방에 직면한 국내 건설업계가 선진외국건설회사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어떠한 전략이 있는지 우리 협회회원사들의 이해를 돋고자 전면 게재하기로 한다.

건설부문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총점검
정부조달협정 타결내용 및 입찰·계약제도
개선방안

시장개방을 맞은 건설업계의 대응방안

건설부문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총점검

김홍수 / 국토개발연구원 건설경제연구원

I.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개관

[1] UR협상의 배경

가) GATT와 UR

① GATT 다자간협상 : 1947년 GATT가 출범한 이후 교역자유화를 위한 8차례에 걸친 다자간협상을 추진

② 다자간협상에는 별명이 부여되어 Dillon, Kennedy, Tokyo, Uruguay Round 등으로 호칭

③ 덜론, 캐네디라운드 등 6차례에 걸친 다자간협상을 통하여 상품교역 활성화를 위한 관세인하를 추진

④ 7차 도쿄라운드 ('73-'79)에서는 관세인하와 함께 새로운 교역장애요소로 등장하기 시작한 비관세장벽의 완화를 위하여 일반협정과는 별도의 9개 MTN 협정(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 Code)을 체결 - 정부조달협정, 반덤핑

협정, 보조금 · 상계관세협정, 기술장벽협정 등이 있으며 GATT 회원국의 일부가 선별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복수간 협정 - 이러한 MTN 협정은 일반협정 제정시 생각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조치의 성격이다.

⑤ 우루과이라운드는 '83년의 월리암스버그 경제정상회담에서 구상되기 시작하여 1986년 9월 우루과이 푼타델 에스테의 GATT 각료회의에서 새로운 라운드의 출범을 선언하게 되었고 우루과이라운드라고 명명

나) UR의 목표와 특징

① 수출 자율 규제(VER), 시장질서 협정(OMA)과 같은 회색조치(grey measures)의 철폐

② 지적소유권, 직접투자, 서비스 등 신교역

재를 의제로 채택 (서비스교역량이 상품교역량의 약 25%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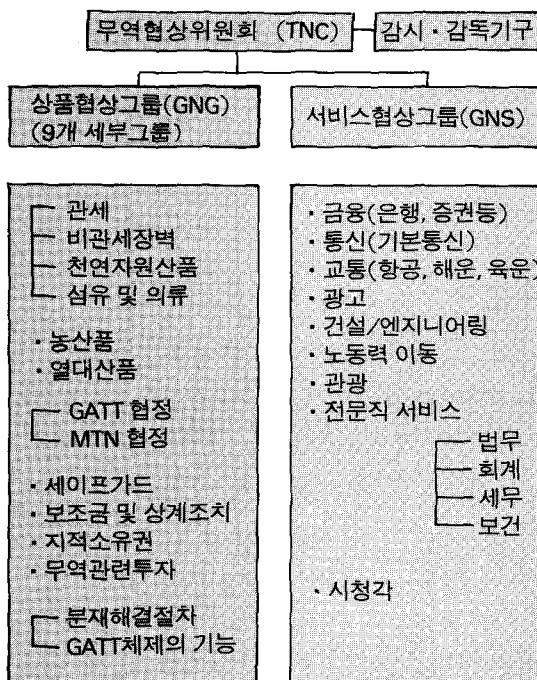
③농산품, 섬유 등 기존 교역상품중 GATT 밖에 있던 상품을 체제내로 흡수

다) UR협상의 구조

①TNC : 무역협상위원회, 협상을 총괄

②GNG : 상품협상그룹, 9개 세부 협상그룹
이 14개 의제를 취급

③GNS : 서비스협상그룹, 건설을 포함한 모든 서비스를 다루며 GATS, 부문별 주석서의 작성과 양허협상이 주요 업무



[2] 서비스와 건설업

가) 산업분류와 건설업의 실체 – 건설업이 서비스인가

나) 건설업의 범위 – 광의, 협의

다) 건설서비스 교역의 정의 – 건설서비스 자체의 국경간 이동이나 외국 건설업체가 특정 건설프로젝트를 직접 수주, 집행하는 것으로 필요한 범위내에서는 자본, 인력, 장비, 자재의

이동이 일정한 기간내에 수반될 수 있는 서비스교역.

II. UR건설부문 협상의 경위

[1] 건설시장 개방논의의 이원화

가) 건설시장의 국제화를 위한 논의는 민간 건설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협상과 공공 건설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조달협상에서 이원적으로 진행되었다.

나) UR에서 서비스를 새로운 의제로 채택하면서 서비스의 정부조달을 서비스협상에서 포함할 것인지 또는 정부조달협정에서 포함할 것인지의 논란이 있었으나 개도국들의 주장에 따라 모든 서비스의 정부조달이 정부조달협정내에서 논의되기로 결정되었다.

① 따라서 서비스협정(GATS) 13조 정부조달 조항 1항에서는 정부조달에 대한 최혜국대우, 시장접근, 내국민대우, 원칙의 적용을 배제

② 한편 정부조달협상은 협정조문의 개선뿐 아니라 대상기관에 있어서는 지방정부와 정부투자기관 또 분야에 있어서는 서비스로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협정을 하게 된다.

다) 우리는 정부조달협정의 확장협상에 참여하며 정부조달시장의 개방을 추진하게 된다.

라) 건설의 입장에서는 아마도 정부조달협상이 서비스협상보다 더 중요할 것이다.

① 정부조달협상에서는 건설의 비중이 가장 크고 건설과 서비스로 구분, 논의

② 정부의 개방의지가 가장 확실히 관찰될 수 있는 분야가 공공부문

③ 공공부문의 변화가 민간부문의 변화를 선도

마) 서비스협정 제13조 정부조달 2항에서는 WTO 설립협정 발표후 2년내에 본 협정의 구도하에 서비스의 정부조달에 관한 다자간협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

① 동 다자간협상이 실현된다면 교역자유화를 위한 노력은 정부조달에도 확산되어 정부조달의 특수성이 소멸하게 될 것이다.

②정부조달협정의 주요내용이 GATT와 GATS에 흡수될 것이다.

[2]서비스협상 경위

가) 1986년 9월~1988년 12월 몬트리올 중간 평가

①UR출범후 몬트리올 중간평가까지는 주로 서비스전문가들이 제안한 MFN, 내국민대우, 접근적 자유화 등 서비스교역 관련 기본원칙들에 대한 검토·평가

②GATS, 부문별 주석서, 양허협상의 세과제 인식

나) 1989년 1월~1990년 12월 브랫셀 각료회의

①기본원칙들의 구체화 및 통신, 건설, 금융 등 6개 시범분야를 선정, 이들 원칙들의 적용 가능성 Test에 집중적 노력

②주석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합의-건설 분야 주석은 필요없는 것으로 판명

③논의의 결과를 반영한 서비스 Test가

브랫셀 각료회의에 제출되었다.

④브랫셀 각료회의 : 당초의 '90년 12월 타결시한을 지키기 위해 개최되었으나 정치적 타결에 실패, 협상시한이 1년간 연장되었다.

다) 1991년 1월~1991년 12월

①미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포괄적 협상권한인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이 소멸되었고, 이란-이라크 전쟁 발발로 협상은 한때 소강상태였으나 신속처리권한이 연장되면서 협상이 재개됨

②브랫셀 각료회의 이후에는 서비스 Text 수정작업진행과 함께 상당수 국가가 자국 양허계획표(Offer List)를 제출함에 따라 이에 대한 협의(양허협상)가 병행되어 진행되었으며,

91. 12 GNS 의장이 UR협상 시한에 맞추어 그간의 작업결과를 반영한 서비스일반협정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 GATS)안이 TNC에 제출함으로써 Dunkel Text에 포함

③던켈 최종의정서안(Draft Final Act) : 덴켈 사무총장이 직권으로 제시한 7개 분야의 최종협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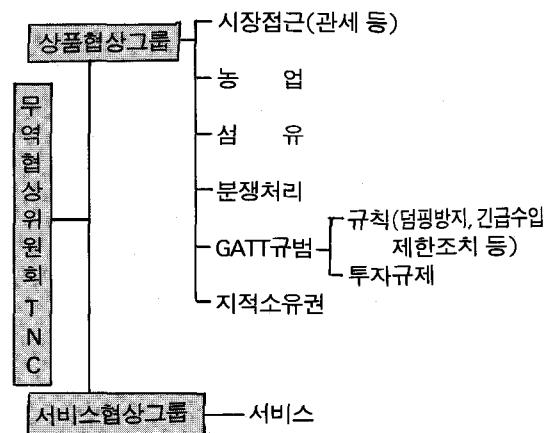


건설시장개방에 대한 논의는 공공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조달협상과 민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협상 등 2원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협의결과 서비스협상 양허안은 일반건설의 경우 올해부터 외국건설사의 100% 국내단독투자가 허용되고 96년부터는 지사설립도 허용되며, 전문건설은 96년과 98년에 각각 단독투자와 지사설립이 허용된다.

시장점식이 우려되는 분야는 공공시장으로, 공종별로는 플랜트, 설비, 신공항·특수교통 등 대규모 토목공사와 민자유치 SOC(사회간접자본) 산업분야에 대한 시장점식이 유력하다.

라) 1991년 4월~1991년 12월 기간중의 UR협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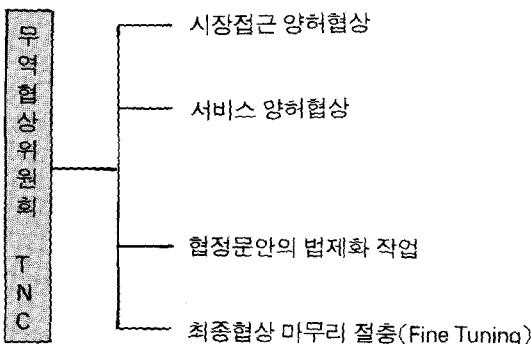


마) 1992년 1월~1993년 12월

① 협상시한을 재연장

② DFA제출 이후 지금까지 서비스협상그룹 참가국들은 DFA 제출시 미결과제로 남아있던 협정문 관련 기술적 과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동 DFA Text에 따라 자국의 시장개방 양허계획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진행

③ 4 Track Approach : 협상구조가 단순화되어 4개 분야로 압축('92. 1~'93. 12)



④ Blair House Agreement : '92년 11월의 미·EC간 농산물에 대한 기본합의, UR협상 종결의 계기를 마련하였으나 '92년 12월중 최종 협정문안에 대한 다수국의 수정요구와 EC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타결에 실패

⑤ '93년에 들어 Quad 통상장관회담(미국, EC, 일본, 카나다의 4자 통상회담)과 7월의 G-7 도쿄 정상회담에서 UR협상 타결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

⑥ MTO, ITO, WTO : 국제무역기구 창립을 위한 움직임에 미국이 한때 반대

⑦ 최혜국대우 예외사항 : 최혜국대우원칙의 적용이 어려운 사항들을 인정받기 위해 국가별 목록 작성중 미국이 특정 분야 전체를 예외로 하고자 하여 난항 거듭

⑧ 9월 이후 농산물, 서비스, WTO 등의 의제에서 협상이 급진전을 보여 12월 15일에 협상이 종결되었다.

⑨ 이번에 타결에 이르게 된 것은 EC, NAFTA 등 지역경제블록이 강화되는 추세속에서 UR이 GATT체제를 유지하는 확고한 대안이며, 침체된 세계경제의 돌파구 마련의 필요성 및 금년 12월 15일에 종료되는 미국의 신속처리권한을 미 의회가 재연장해 줄 가능성이 없다는 인식, 그리고 '86년 출범 이후 7년째 지연되고 있는 동 협상의 종결가능성은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 주요국의 인식이 일치했기 때문이다.

⑩ 클린턴라운드 : UR이 실패할 경우 반경쟁적 관행과 환경을 중시하는 새로운 라운드를 미국이 구상, UR 종결후 새로운 환경라운드의 시작 가능성은 매우 높다.

[3] 정부 조달협정의 배경 및 협상 경위

가) 협정의 성립 배경

① 정부조달협정은 세계 각국의 정부조달 관행에서 존재하는 차별행위를 규제하고 국제조달시장의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정부조달은 현행 GATT 3조 8항에서 내국민 대우원칙의 예외항목으로 인정)

② 1979년 동경라운드의 일환으로 정부조달 협정(GPA ;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제정 (1981년부터 발효)

③ 1987년에 1차 개정되어 13만 SDR 이상의 상품구매중 중앙정부가 최종소비자가 되는 정부조달에 적용되고 있었다.

④ 당시 협정 가입국은 EC 9개국(영국, 프랑스, 서독, 벨기에, 덴마크, 아일랜드, 아일리, 룩셈부르크, 네델란드)과 미국, 일본, 카나다,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이스라엘의 20개국

⑤ EC 회원국으로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가 추가되었고 한국도 신규 가입을 위해 확장 협상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협상 참가국은 총 24개국

⑥ 협정의 기본원칙은 협정가입국간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의 원칙 적용과 명료하고 공정한 국제경쟁입찰의 시행이다.

나) 한국의 협정가입 추진경위

① '90년 경제장관회의에서 가입추진 방침 결정, 6월에 대외협력위원회에서 최초의 가입한 확정제출-조달청 등 35개 중앙행정기관과 한국통신 및 대한주택공사(총 37개 기관) 양허

② '91년 협정가입국과 양자협상시 미국 등 주요 가입국으로부터 확장협상에 참여할 것을 요구받아 확장협상 참여 결정

③ 확장협상에서는 “중앙 및 지방정부와 정부의 영향 또는 통제를 받는 기관”이 구매하는 “물품, 서비스, 건설” 부문의 구매까지 협정 적용 확대를 목표

④ 이후 수차례의 확장협상 참여하였으며 이 기간중의 확장협상은 주로 협정본문의 개선을 위한 협상(Framework 협상)으로서, 91년 12월에 그간의 협상결과를 정리한 의장초안이 배포되었다.

⑤ '92년 5월에 우리의 확장협상 양허안을 GATT 사무국에 제출

⑥ 미국, EC, 일본 등 주요국과 양허협상 개최

⑦ '93년 12월 UR 종결과 함께 우리의 정부 조달협정 가입을 위한 양허안도 확정되었다.

III. 협정문안의 주요내용

[1] 서비스협정의 기본구조

가) UR/서비스협상은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동 협정은 다음 세가지로 구성

① 협정본문(Framework) : MFN 등 기본원칙 및 각종규칙과 서비스 분야별 자유화를 위한 국가간 양허협상의 기본메카니즘을 규정 (6부 35개 조문)

② 부속서(Annex) : 서비스분야별로 협정 본문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거나 추가규정 (인력이동, 금융, 통신, 항공, MFN 면제 등 5개 부속서)

③ 국가별 양허표(National Schedule) : 협정 본문 및 부속서하에서 국가간 양허협상의 결과

에 따라 나라별로 양허표를 첨부

나) 협정본문(6부 35개 조문)

① 제1부 : 서비스교역의 정의와 포괄범위

② 제2부 : 모든 서비스분야에 예외없이 적용되는 일반적의무와 규율-MFN원칙, 공개주의, 국내규제, 독점, 세이프가드, 지급 및 이전, BOP조항, 정부조달, 예외, 보조금 등

③ 제3부(구체적 약속) : 시장접근 및 내국민 대우에 관한 자유화 약속(Specific Commitment) 규정으로서 각국이 양허표 (National Schedule)에 등재한 분야에 한하여 적용

④ 제4부(점진적 자유화) : 점진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비스협정 발효일부터 5년 이내에 후속협상을 시작하고(그 이후 주기적으로 협상) 자유화 과정에서 각국의 발전수준을 적절히 고려

⑤ 제5부(제도규정) : 분쟁해결절차, 협의 절차 등을 규정

⑥ 제6부(최종조항) : 수락 및 가입, 용어의 정의 등을 규정

다) GATS의 주요규정

① 공개주의 : 각국의 규제상황이 인지될 수 있도록 공개, 문의처의 보장(기본의무)

② 최혜국대우 : 한 회원국이 다른 국가에서 부여한 혜택을 즉시 모든 다른 회원국에게 확대(기본의무)

③ 시장접근 : 공급자가 자기가 원하는 공급 양식에 따라 외국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시장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칙, 서비스의 공급양식을 4형태로 구분(양허대상)

④ 내국민대우 : 모든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외국 공급자가 같은 시장내의 국내 공급자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양허대상)

라) UR향후 일정

① '94년 2월 15일까지 : 각국 최종양허안 GATT 사무국 제출

② '94년 3월말까지 : UR협상 결과와 각국의 양허안 일치토록 확인 및 조정

③ '94년 4월 12일 :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116개국이 참여하는 각료회의 개최, UR 최종

의정서 가서명 및 발효시점 논의

- ④'94년 12월말까지 : UR 최종의정서에 대한 각국 비준 완료, 발효시점 결정을 위한 각료 회의(한국 절차 : 법제처 심사-국무회의, 심의-대통령 재가-국회 비준동의)
⑤'95년 7월 1일 : UR협정 발효예정

UR서비스협상 및 정부조달확장협상의 타결로 일반건설업은 오는 '95년 1월부', 전문건설업은 '96년 1월부터 외국업체의 100% 단독투자를 허용하고, 외국업체의 지사설립은 일반건설업이 '96년 1월, 전문건설업은 '98년 1월부터 허용된다.

[2]정부조달협정의 구조와 주요 조항

가)정부조달협정(GPR/Spec/77)은 협정의 기본정신을 선언하고 있는 전문과 제1조의『적용범위』부터 제24조『최종규정』에 이르는 협정본문, 각국의 양허내용을 담고 있는 부록 1을 포함한 4개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정부조달협정 발효시기

- ①1996년 1월부터
②다만 한국의 경우 신규 가입국인 것이 감안되어 1997년 1월부터

다)주요조항

①제2조 가격산정 : 가격산정의 방법이나 분할 발주 등이 협정 적용을 기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②제3조 내국민대우 및 무차별원칙 : ⑦협정의 적용을 받는 정부조달에 있어서 모든 법령(Laws), 규제(Regulations), 절차(Procedures), 관행(Practices)상 국내와 다른 회원국 또는 회원국간 무차별(불리하지 않은) 대우, ⑨본 협정에 포함되는 정부조달에 관한 법령, 규

제, 절차, 관행상에 있어서 조달 Entities는 현지 설립된 공급자를 외국 Affiliation이나 소유 정도에 따라 다른 현지 공급자에 의해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제6조 기술명세 : 품질(Quality), 실적(Performance), 안전(Safety) 등에 관한 기술적 표준이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

④제7조 입찰절차 : 입찰절차는 무차별적이며 정부조달협정 7조 이하의 제반조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제8조 자격심사 : ⑦입찰조건은 심사절차를 완결지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Publish되어야 한다. 입찰의 모든 조건은 계약의 수행 능력에 필수적인 것으로만 제한된다. ⑨공급자의 재정적, 상업적, 기술적 능력은 공급자의 조달기관의 영토뿐만 아니라 범세계적 사업활동을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⑩유자격 공급자의 항구적인 명단을 갖고 있는 Entities는 공급자가 당시 자격심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자격자일 경우 빠른 시일내로 명단에 올려야 한다.

⑥제9조 입찰초청 : 모든 예정된 조달은 입찰공고(Publish)되어야 하고, Annex II (Publications utilized by Parties for the Publication of Notices of proposed Procurements)에 해당하는 Publication에 공고

⑦제10조 입찰지명절차 : ⑦Selective Tendering 절차에 있어서 적정한 국제경쟁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대한의 국내 및 외국 공급자를 입찰에 초청, ⑩유자격자의 항구적인 명단을 갖고 있는 Entities는 명단내에서 입찰참가자를 선정할 수 있다. 선정은 명단내의 공급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방법이어야 한다.

⑧제11조 입찰신청시한 및 납품/인도시한 : ⑦Open Procedure의 경우 Publication 후 40일 이상, ⑨Selective Procedure의 유자격자 명단에 의존하지 않는 경우 입찰 신청기간은 Publication 후 25일 이상, 입찰접수는 입찰초청이 나간 후 40일 이상, ⑩Selective Procedure에서

정책토론회 ● 건설시장개방 대응방안

유자격자 명단에 의존할 경우 입찰접수는 입찰초청이 나간 이후 40일 이상, 입찰초청과 Publication 일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40일 이상은 보장

⑨제12조 입찰서류 : 입찰 신청서류가 복수의 언어로 허용될 경우 그중 하나는 WTO 공용 어라야 한다.

⑩제13조 입찰서류의 제출, 접수, 개찰 및 낙찰 :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있고 최저입찰자 이거나 사전에 공표된 평가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판정된 입찰자에게 낙찰

⑪제14조 시답 : 공고에서 명시했을 경우 또는 사전 공지된 평가기준으로 여러 입찰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 때 시답 가능

⑫제15조 제한경쟁입찰 : 입찰자가 없을 때, 담합에 의한 입찰, 입찰요건을 충족시키는 입찰자가 없을 때 등 지극히 제한적으로 인정

⑬제16조 대응구매 : 자격심사와 유자격자 선정 또는 입찰의 평가, 낙찰의 과정에서 대응구매를 요구하거나 고려할 수 없다.

⑭제17조 투명성 : 입찰·계약 절차의 투명성 보장

⑮제18조 정보 및 검토 (발주기관의 의무) : 회원국 공급자의 요구에 따라 다음의 정보 제공 ①입찰관행과 절차, ②왜 자격심사에게 탈락했는지, 왜 기존자격을 박탈했는지, 왜 선정이 되지 않았는지, ③왜 낙찰이 되지 않았으며 낙찰자의 이름과 강점

⑯제19조 정보 및 검토(협정가입국의 의무) : ①협정에 포함된 정부조달 관련 법령, 규제, 사법적 결정 등의 Annex IV Publication에 공표, ②협정에 포함된 조달 관련한 통계를 매년 Committee에 보고

⑰제20조 이의신청절차 : ①가입국은 공급자가 협정위배 사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무차별적이며 시의적이며 명료하며 실효성 있는 절차를 제공해야 한다. ②이의신청절차에서는 (a) 협정위배를 교정하고 상업적 기회를 보존하기 위해서 신속한 임시조치를 취할수

있다. (b) 조달절차의 중지도 포함된다. (c) 위 배에 따른 보상도 가능.

⑱제21조 기구 설치 :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정부조달 Committee가 설립된다.

⑲제22조 협의 및 분쟁해결 :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WTO의 분쟁해결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양해서를 적용

⑳제23조 예외조항 : ① 국가방위 목적의 예외 인정, ② 차별대우가 목적이 아닌 이상 공공도덕, 공공질서, 공중보건, 지적재산권, 장애자, 자선단체 보호 등을 위한 조치를 막지 않는다.

㉑제24조 최종규정 : ① 홍콩 및 한국정부는 1997. 1. 1. 이전까지 제21조 및 제22조를 제외한 본 협정규정의 적용을 연기할 수 있다. ② 본 협정의 시행일과 홍콩정부의 협정 적용일까지의 기간동안 홍콩과 타 가입국간의 권리 및 의무 사항은 1988년 협정에 따르도록 하며 이는 1996. 12. 31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IV. 건설부문 양허안의 주요내용

[1] UR 서비스협상 양허안

가) 공통 규제사항으로 외국인 투자, 외국인 토지소유, 인력이동에 관한 규제를 밝히고 있다.

① 외국인 토지법에서 외국인으로 의제되는 국내법인의 토지취득은 실수요 범위내로 제한된다. 직접 서비스업 영위에 필요한 업무용 토지는 소유가 인정될 것이다.

② 임원, 상급관리자, 전문가, Sole Reprsenter(임원 또는 상급관리자로서 상업적 주체 설립의 책임을 맡은 자), Service Seller(국내에 소재하지 않은 서비스 공급자를 대표하여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판매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일시입국하는 자) 범주의 인력에 한하여 일시적 이동이 된다.

나) 건설

① 우리는 협정문 규정에 따라 '91년 1월 최

초 양허계획표를 제출한 이후 '92년 2월에 수정 양허계획표를 제출하였으며 '93년 8월에는 제2차 수정양허표, '93년 10월에는 최종 양허표 초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분야 또는 업종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민대우에 대한 제한
일반건설 (511, 512, 5131, 5132, 5133, 5136*, 5137, 5139)	1)Unbound* 2)없 음 3)-지사설립은 '96.1.1 까지 허용되지 않는다. -면허는 1년마다 발급된다. -단일계약의 도급한도제도가 있다. -하도급의무제도가 있다. 일괄하도급은 제한된다. 4)없 음	1)Unbound* 2)없 음 3)없 음 4)없 음
전문건설 (5134, 5135, 5136**, 514, 515, 516 , 517)	1)Unbound* 2)없 음 3)-국내기존면허업체와 합작 의무 있다. -'96.1.1부터 100% 단독투자 허용 -'98.1.1부터 지사설립 허용 -면허는 1년마다 발급된다. -단일계약의 도급한도제도 있다. -하도급의무제도가 있다. 일괄하도급은 제한된다. 4)없 음	1)Unbound* 2)없 음 3)없 음 4)없 음

Unbound* : 기술적 실현가능성 희박에 따른 Unbound

5136* : CPC 5136중 발전시설공사 제외

5136** : CPC 5136중 발전시설공사

[참고사항]

* 협정이 대상이 되는 서비스 공급형태

- (i)국경간 서비스공급(Cross border supply) : 외국 소재 은행에의 예금가입
- (ii)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 해외관광, 해외유학 등(소비자의 이동)

(iii)상업적주재(Commercial Presence) : 외국기업의 자회사, 합작회사, 지사 등의 설립(자본의 이동)

(iv)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s) : 서비스공급인력의 현지주재(노동의 이동)

* 자유화 추진방식은 모든 회원국의 서비스시장개방을 일시에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간 협상을 통하여 점진적(약 5년주기)으로 추진

(i)각국이 자유화를 약속한 서비스분야 확대(양허표에 Positive방식으로 기재)

(ii)각국의 서비스분야별 제한조치의 감축(양허표에 Negative방식으로 기재)

(iii)관세가 아니라 규제, 제도를 협상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 서비스분류

(i)서비스분야는 각국마다 그 분류체계와 규제체계가 상이하다.

(ii)업종명이 같아도 국가마다 포괄범위가 서로 달라 Offer 평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iii)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하여 사무국이 '91. 7 서비스분야 목록 작성

(iv)동 목록은 UN에서 작성중인 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CPC)에 기초



* DIVISION 51 CONSTRUCTION WORK

511 Pre-erection work at construction sites

512 Construction work for buildings

513 Construction work for civil engineering

514 Assembly and erection of prefabricated constructions

515 Special trade construction work

516 Installation work

517 Building completion and finishing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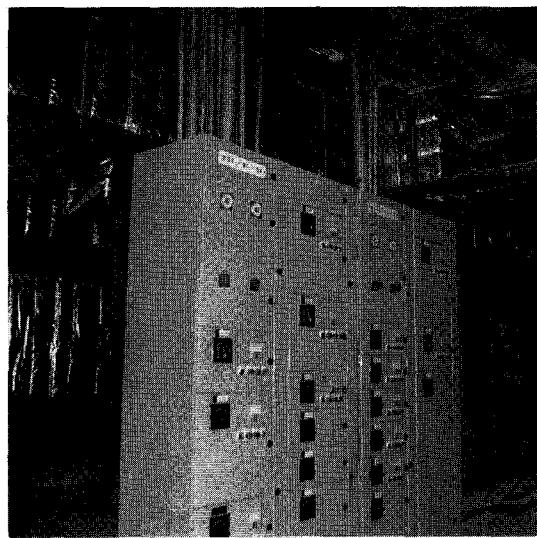
518 Renting services related to equipment for construction or demolition of buildings or civil engineering works, with operator

* 한국분류에 의하면 일반건축, 일반토목, 설치 및 조립, 건축마무리 공사, 기타 서비스 등 5개 전업종이 개방된 것이며 미국, EC, 일본, 캐나다, 중국 등 주요국도 건설 5개 전업종을 양허하고 있다.

정책토론회 • 건설시장개방 대응방안

건축설계

분야 또는 일종	시장 접근에 대한 제한	내국인 대우 에 대한 제한	추가 약속
건축설계 서비스 (8671)	1) 상업적 주재 필요 2) 없음 3) 법인이 건축사사무소 를 설립할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한국 건축사 자격을 가진 자여야 하 며 건축사 사무소의 경 우에는 한국 건축사 자 격을 가진 자만이 설립 이 가능하다. 4) 없음	1) 없음 2) 없음 3) 없음	1) 2) 4) : '96. 1부터 한국 건 축사와 공동계약에 의한 외국 건축사의 건설설계서비스 공급 허용 외국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는 악식시 협을 통하여 한국 건 축사자격 취득 가능



[2] 정부조달 협성 양허안

가) 기준 협정안에 대한 가입안이 '90년 6월에 제출되었었고, 확장협상에서는 '92년 5월 1차 양허안, '93년 10월 2차 양허안이 이어 '93년 12월 최종 양허안 확정

나) 서비스 및 건설의 양허와 관련 UR/서비스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서비스 교역에 관한 규제 및 절차가 정부구매 활동에도 적용된다는 가입국간의 합의가 형성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양허

다) 양허기관의 기준설정

① 중앙정부기관 :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

② 지방정부기관 : 지방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상급자치단체의 지방행정기관

③ 기타 공공기관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자기관

라) 중앙정부기관 양허내용

① 양허기관-정부조직법상의 46개 중앙행정기관 중 안보관련 4개 기관(대통령 비서실, 경호실, 안전기획부, 비상계획위원회)을 제외한 42개 기관

② 대상분야 및 하한선 : 물품(13만SDR), 서비스(13만SDR), 건설(500만SDR)

③ 조달청 주석사항 : 양허된 기관의 구매분만 포함

마) 지방정부기관 양허내용

① 양허기관-서울특별시, 5개 직할시와 9개도 양허

② 대상분야 및 하한선 : 물품(20만SDR), 서비스(20만SDR), 건설(1,500만SDR)

바) 기타 공공기관

① 양허기관-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23개 정부투자기관

② 대상분야 및 하한선 : 물품(45SDR), 건설(1,500만SDR)

사) 건설 양허 세부업종

• UN 분류 CPC 51군 8개 업종 중 518을 제외한 7개 업종 양허

아) 예외사항

① 농수산물 비축, 주요 원산재 비축구매 등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소요되는 물품, 서비스의 구매

② 중소기업 단체수의계약 등 예산회계법상의 수의계약과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농산물 관련 구매

③ 국가기간전산망계획에 따른 전산기기 구매, 항공우주개발촉진법상의 인공위성 구매

자) 주요국의 양허내용

국 가	중 앙 정 부			지 방 정 부			기타공공기관		
	물품	서비스	건설	물품	서비스	건설	물품	서비스	건설
한 국 ¹⁾	13	13	500	20	20	1,500	45		1,500
미 국 ²⁾	13	13	500	35.5	35.5	500	40	40	500
E C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일 본 ³⁾	13	13(45)	450	20	20(150)	1,500	13	13(45)	1,500
카나다 ⁴⁾	13	13)	500	35.5	35.5	500	35.5	35.5	500
스위스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오스트리아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스웨덴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핀란드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노르웨이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홍 콩	13	13	500	20	20	500	40	40	500
이스라엘	13	13	850	25	25	850	35.5	35.5	850

1)518제외

2)한국에게는 지방, 기타 공공기관 공사중 15,000,000SDR 이상의 공사에만 협정 적용

3)서비스중 건축설계, 엔지니어링 서비스는 팔호안의 양허하한 적용

4)준설, 교통부 공사는 제외

* 1SDR은 약 1,100원

주)기존 회원국의 하나인 싱가풀은 아직까지 양허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협정 참여 의사 불분명

V. 건설시장 개방안의 의미 및 파급효과

[1] 개방의 일정과 양태

가) 일반건설 개방의 시기

① 현재 서비스협정의 예상 발효시기는 1995년 7월 1일 이후

② '93년 6월에 당시 갖고 있던 개방일정에 따라 일반건설분야를 '94년 1월부터 외국인투자제한업종에서 제외하겠다고 대외적으로 개방 예시

③ 재무부에서 예시한 일정에 따라 건설 12개

업종(건축물 해체공사업, 토공사 및 정지공사업, 지반조성공사업, 건축물 자영공사업, 주택도급 건설업, 사무 및 상업용 건물도급 건설업, 공업용 및 유사 산업용 건물도급 건설업, 달리 분류되지 않은 건물종합건설업, 도로건설 및 포장공사업, 교량·터널 및 철도건설업, 수로·댐 및 급배수시설 건설업, 기타 토목건설업)을 1994년 1월부터 개방

④ 개정된 건설업법에 따라 금년중에 면허가 개방되면 외국 건설업체에게도 면허를 발급하게 될 것이다.

나) '96년 1월부터도 정부조달가입국들의 양허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

- 정부조달협정 24조의 홍콩에 대한 규정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의무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97년 1월부터 협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 개발사업도 개방되는가

① 우리와 외국간에 있어서 건설분야의 개발사업 포함여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다.

정책토론회 • 건설시장개방 대응방안

② 또한 외국인 토지법에서 실수요 범위의 업무용 토지로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의 취득을 인정해주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③ 개발사업 허용시의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라) 정부조달협정에 따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외국업체에게도 면허를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한국	미국·EC
시장접근	상업적 주재 요구	사업적 주재 요구안함 미국 일부 주에서 면허를 요구하나 이는 면허세를 받기 위한 수단이자 미국내의 주소조치도 요구하지 않는다.
내국민 대우	모두 한국업체이기 때문에 차별적이 규정제가 없다.	시장에 자국업체, 외국업체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자국업체를 우대하기 위한 여러조치가 있다.(Buy American Policy, American preference Policy)

마) 미국·EC가 정부조달협상에서 추구하는 바는 외국업체에 대한 차별조치를 없애자는 것이나 우리는 협상에서 무엇을 양허한 것인지 해석의 여지가 있다.

바) 우리 공공건설시장의 개방시기는 (괄호안은 전문건설 개방시기)

상업적 주재	정부조달협정 가입국		정부조달협정 비가입국	
	일반 1994(1996)	일반 1994(1996)	×	×
	일반 1997(1998)			
상업적 주재 없이	×	×		

① 면허업체로 시장진입하는 외국업체(내국법인)에게는 공공시장의 참여도 허용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② '96년부터는 지사(국내업체와 차별 가능

한 새로운 개념) 형태의 진입이 허용되는데 일단 민간건설시장에 국한하여 활동이 허용될 것이다.

③ 그러나 정부조달협정이 발효되는 1997년부터는 공공건설시장에서도 지사의 활동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

④ 아마도 정부조달가입국의 지사면 우리가 양허한 범위내에서 조달시장의 참여를 허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비가입국의 경우 조달시장의 참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⑤ 서비스협상에서의 서비스교역에 관한 규제와 절차를 전제로 조달시장을 양허하였기 때문에 상업적 주재가 전혀 없이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당분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

[1] 건설시장개방의 파급효과

가) 일반건설 파급효과

① 매 5년마다 협상을 계속하기로 함에 따라 자유화약속 대상업종이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더라도 점차 외국기업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 서비스산업의 효율화와 경쟁력제고에 기여하는 반면 경쟁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담으로 작용

② 외국선진기업의 진출은 선진국의 경영기법 및 기술이전, 경영촉진효과를 수반하여 국내 서비스분야의 경쟁력 향상과 국제화를 촉진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보다 넓혀주게 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지닌다.

③ 서비스가 제조업부문 등의 생산요소로 투입되므로 값싸고 질좋은 서비스의 공급은 타경제활동의 효율성 증대에 기여

④ 대외경제정책연구원('93. 12, OECD보형 활용)-향후 10년간 총 225억달러의 추가 수출증대효과, 같은 기간중 총 72억달러의 공산품 및 8억달러의 쌀 추가 수입증대효과

나) 건설시장개방의 파급효과

건설부문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총점검

긍정적 인측면	부정적 인측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자에 양질의 서비스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 • 건설업의 합리적 개편과 고부가가치 산업화 촉진 • 국내업체의 국제경쟁력 제고 • 해외수주기회 확대, 시장다변화 가능 * 저렴한 제3국 인력의 유입으로 건설업계의 인건비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건설시장의 잠식 • 과다경쟁 초래 • 자본력이 약한 중·소건설업체의 도산 • 외국업체가 고급건설엔지니어링 분야를 독점하게 되면 국내업체의 기술수준향상 기회 상실 * 국내사업 증가 * 해외 단순노무직 위임으로 사회문제 대두

* 대폭적인 노동력 이동이 허용될 때의 예상 파급효과

다) 국내건설시장 잠식 가능성

① '92년도 국내일반공사 총액 34.1조원, 공공부문 공사는 전체의 36.9%인 12.6조원

② 민간시장에는 외국업체가 면허취득 또는 지사형태로 전면적으로 접근 가능

③ 공공조달시장 중 개방대상분야인 정부 53억, 지자체 및 투자기관 160억원 이상 공사의 시장규모는 공공부문의 25%에 해당하는 3.2조원

라) 경쟁력 분석

(단위 : 억 달러, %)

		토 목	건 축	특수·플랜트	전기·통신	용 역	합 계
1982	A (비중)	96.6(21.2)	181.0(39.6)	124.4(27.2)	34.9(7.6)	19.9(4.4)	456.7(100.0)
	B (비중)	40.9(35.9)	52.6(46.2)	14.5(12.7)	5.8(5.1)	0.1(0.1)	113.9(100.0)
	B(비중)/A(비중)	1.70	1.17	0.47	0.67	0.02	
1986	A (비중)	52.9(40.4)	24.9(19.0)	31.9(24.4)	11.9(9.1)	9.2(7.0)	130.8(100.0)
	B (비중)	5.0(40.3)	5.9(47.6)	1.2(9.7)	0.2(1.6)	0.0(0.0)	12.4(100.0)
	B(비중)/A(비중)	1.0	2.50	0.40	0.18	0.00	
1990	A (비중)	96.4(42.6)	14.4(6.3)	89.1(39.3)	18.0(8.0)	8.6(3.8)	226.5(100.0)
	B (비중)	49.1(84.5)	1.3(2.2)	7.7(13.3)	0.0(0.0)	0.1(0.0)	58.1(100.0)
	B(비중)/A(비중)	1.98	0.35	0.34	0.00	0.00	

자료 : 해외건설협회

주 : A 중동의 공종별 발주규모

B 한국의 중동으로부터의 공종별 수주규모

④ 정부공사의 대부분이 장기계약계약의 형태로 발주되므로 실제 개방대상은 3.2조원보다 클 것이다.

⑤ 민간분야는 면허(앞으로는 진입비용이 적용되는 지사) 형태로 진입하는 외국건설업체에게 모두 개방되나 민간공사의 전당 규모가 크지 않아 단시일내에 급격한 시장잠식은 없을 것이다.

마) 외국 건설업체 진출예상 분야(대한건설협회 자료)

- ① 원전설비 등 발전설비분야
- ② 환경, 화학공업 플랜트, 위생설비 분야
- ③ 신공항, 특수교량 등 대규모 프로젝트, 민자유치 대단위 SOC 사업
- ④ 재개발, 재건축 정보화 빌딩 분야
- ⑤ 지질·지반조사, 냉난방, 기계설비 등 단일의 특수·전문 업종
- ⑥ 기술, 자본력 있는 대규모 업체(특히 일본) 중심으로 진출이 시작될 것이다.

정책토론회 • 건설시장개방 대응방안

바) 파급효과 분석시 고려사항

① 외국업체의 진입의도 파악 : 합작투자가 허용되었던 과거에 일부 전문면허 업종에 몇개 업체가 우리측의 요청에 의해 진출하고 있었다.

② 자본, 자재, 장비 시장도 함께 개방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건설시공능력뿐만 아니라 한때 부수적이라고 생각되었던 기타 생산요소의 조달능력에 따라 공사의 수주여부가 좌우될 수도 있을 것이다.

③ 국내시장의 잠식 가능성 있는 만큼 해외 건설시장에의 진출 가능성도 열림. 예로 미국의 American Preference Policy나 Buy American Policy의 불이익을 더이상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일본의 건설시장에서도 미국에게 주어진 혜택을 그대로 한국이 확대 적용받을 전망이다.

④ 시장잠식과 해외진출 가능성의 균형된 시각에서 면허, 도급한도, 각종 지원책 등의 제도 개선 문제를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VI. 건설시장개방 대응방안

[1] 대응과제

가) 건설부의 대응과제

- ① 외국업체의 면허부여 방법
- ② 지사의 인정 방법
- ③ 해외공사 실적인정 문제
- ④ 인력, 자본, 기자재 이동허용 범위
- ⑤ 외국인 토지소유 인정문제
- ⑥ 분쟁해결절차 확립
- ⑦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반 조치-표준계약서, 하자보수·보증

나) 업계의 대응과제

- ① 기술개발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 ② 종합화, 첨단화, 전문화 추구
- ③ 건설관리 능력의 배양
- ④ 건전한 상관행의 정착

[2] 건설시장개방에 대응한 국내 제도개선 추진 현황

가) 제도개선의 기본방향

- ① 건설시장 개방약속 이행을 위한 조치

- ② 건설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③ 부실시공방지를 비롯한 건전한 건설산업 질서를 위한 개선



나) 건설관련 주요제도의 개선방향 및 추진 현황

제도명	제도개선 취지	시행 또는 실시 예정
면허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면허체계의 합리화 유도· 경쟁의 폭 확대· 외국건설업체의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업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건설면허 조정, 전문면허개편, 소규모 건설업 신설· 신규면허 발급주기단축(수시 또는 일년)· 특인절차의 도입
입찰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급한도제의 합리적 개편· 외국건설업체의 입찰참여허용· PQ제 도입과 정착· 내역입찰제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급한도를 공종별로 세분화할 방침· 토목과 건축으로 분리 추진· 우선 외국업체 도급한도에 대한 특례 규정 마련· 장기적으로 PQ제 확대· 93년 7월부터 100억 이상 일부 공사부터 우선 도입· 저가심사제 폐지, 93년 1월부터 최저가 낙찰제 도입(100억 미만 공사 제외)· 건설업체에 대한 정보 은행(DATA BANK) 설치 추진· 내역입찰대상공사의 확대(30억 미만 건축 공사도 포함)

건설부문의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총점검

제도명	제도개선 취지	시행 또는 실시 예정	제도명	제도개선 취지	시행 또는 실시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가의 법적 구속력을 없애거나 예가 공개 검토 • 내역입찰제도 강화(내역가와 입찰가 불일치 시 무효, 현장설명 참가 의무화 등) • 품과 단가를업체가 내역서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 • 설계 가격의 부당한 삭감 규제 • 터키입찰 확대와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키입찰절차 간소화 • 터키입찰 참가자격 개선 • 대형공사 범위 상향 조정(30억이상→100억 이상) • 부대입찰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년 부터 100억원 이상 PQ 실시 공사에 대해 하도급 내역서 제출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침 (올해 11월부터 10년 이상 현장경험 기사도 감리책임자 자격증) • 대형감리전문업체 설립유도 (건설부산하 4개 공사의 감리전문 회사 설치 와 30대 대형건설업체의 대형감리회사 설립 유도) • 감리법 체계의 일원화 추진 	
감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보수의 현실화 • 부실시공 방지 • 권한과 책임의 강화 • 김리산업 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실비정액기산방식에 공사대금의 일정요율 반영 예정 • 책임감리로 공공공사 감리를 일원화 • 시공 중지명령권 등의 권한 강화 • 감리 대상기관의 확대 • 부실시공 손상 책임을 위한 공체 조합기능을 갖춘 협회 신설 • 부실감리에 대한 벌칙 강화 • 감리감독원 설치 추진 • '92. 7. 1. 감리전문업체 수시등록제로 전환 • 외국감리회사의 시장 참여근거 마련 • 감리 가능인력 확대 방 	기술개발 지원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력의 제고를 통한 건설산업경쟁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개발 5개년 계획추진 (93년에서 97년까지 3,366억 투입, 16개 대형연구사업과 15개 주요연구사업추진) • 기술용역의 입찰방법 개선 • 지정된 신기술의 보호 확대 • 기술개발보상제의 활성화
			보증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인 보증제도 추진 • 외국건설업체의 보증 수요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 보증대상업체의 신용평가실시 추진 • 차액보증금 납부 강화 • 외국업체에 대해 조합 임의출자 허용

[3] 해외 건설활성화 방안 추진

가) 다자간협상을 통한 해외건설 활성화 방안 모색

① 해외건설협회를 통하여 외국 건설시장의 제도적 진입 장벽 조사

② 미국의 외국업체 차별적 정책(American Preference Policy 등) 시정 요구 및 Surety bond에 의한 보증제도 개선 요구

③ 일본의 입찰폐쇄성 철폐와 3국 실적 인정 강력 요구-최혜국대우 원칙에 따라 미국에 부

정책토론회 • 건설시장개방 대응방안

여한 혜택을 한국에도 확대해 줄 것을 요청

④ 産·官·學의 실무 대책반 운영

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재개될 양허협상에
서 적극적으로 참여

나) 해외건설의 자율성 제고를 통한 국제경
쟁력 강화와 정부지원 강화를 추진

① 지금까지 서비스산업은 먹고 마시고 노는
산업으로 인식되어 국가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서도 우선순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다.

② 그러나, 건설산업은 국가산업발전의 근저
를 이루는 부문을 포함하며 향후 서비스협정이

정책방향	제도 개선 현황
건설업계의 자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도급지역 제한제도 폐지해외건설도급한도제도 폐지해외부동산 개발사업을 직접투자제한사업이 아닌 일반 사업으로 재분류해외부동산 취득개발 범위 확대 검토(주거건축물에서 상업용 건축물까지도 가능)환경오염방지 시설업과 전문건설업, 토목, 건축의 단일면허업체 해외시장 진출 허용토개공, 전기통신공사, 가스공사 등의 정부투자기관과 서울시지하철공사, 부산토개공의 지방공기업도 해외건설시장 진출 허용
정부지원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연불금융조건 상한액 확대(국가별, 업체별 제한없이 상한액 6천만 달러→1억달러로 확 대)<ol style="list-style-type: none">현지 금융한도 '92년까지 폐지(업체별 계약잔액 50% 한도 폐지)상환기간 연장 (7년→10년)연간지원금액의 30%로 해외건설 지원금리인하융자비율확대(계약액의 60%이내→70% 이내로)해외근로자 소득면세점 상향조정 (50만원→150만원으로 3배 확대)해외건설진흥기금 대폭 확충추진 (연5억의 정부출자에서 해외건설업체의 공동출연과 정 부지원금 10억으로 확대)대외경제협력기금의 해외건설 지원 추진(산업설비중심에서 국한→개도국 SOC 건설수주 연계)

[4] 대응자세

가) 정부 및 업계의 대응자세

① 개방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 다자간 협
상이 쌍무협상보다는 유리, 협상 결과에 대해
능동적·적극적으로 대응

② 정부 : 협정의무의 준수, 각종 규제·제도
의 합리화

③ 업계 : 기술개발투자,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등 적극적 대응

나) 건설산업에 대한 정책당국자 및 일반국
민의 인식전환이 필요

라는 국제적인 규범에 따라 모든 국내규제 및
국제간 교역이 규율되게 되므로 기존의 소비성
산업이라는 인식으로부터 탈피하여 국가산업
의 골간을 이루는 중요한 부문이라는 인식의
전환과 그에 따른 대응이 필요하다.